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재나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A

피고(재심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조주영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0.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재나21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511㎡, E 대 427㎡, F 대 96㎡(이하 순서대로 '제1, 2, 3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사용 종료일 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들(재심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 원고는 2013. 7. 피고를 상대로 제1, 2, 3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12.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심판결). ○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6. 2. 2.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 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제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2014나37100)을 선고하였다(항소심판결).

○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 기각 판결(2016다211187)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6. 7. 1. 항소심판결 중 제1, 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2. 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제8호, 제10호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재심대상판결).

○ 원고는 2020. 6. 15. 다시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나84).

2. 재심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관여한 사건들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1. 선고 93가합52056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6. 9. 선고 97가단14568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가단86870 판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73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1나6278 판결 및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재가단29 판결 등에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중국판결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중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선행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라고 명확히 특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나 ‘심리 미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설회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선의종, 판사 황중연

선 정 자 명 단

- 1. A
- 2. B
- 3. C

끝.

